

무배당 이지세이브저축보험

하나 HSBC 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 이지세이브저축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1년 05월 23일

하 나 HSBC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서 종 무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이지세이브저축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이지세이브(EasySave)저축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및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5년만기	3년납	월 납	만 15 ~ 최고 70세
7년만기	3 / 5년납		
10년만기	3 / 5 / 7년납, 전기납		
15년만기	3 / 5 / 7 / 10년납, 전기납		
20년만기	3 / 5 / 7 / 10 / 15년납, 전기납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 1 구좌 기준: 최저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보험기간	납입기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5년만기	3년납	-	만 15~28세	29~49세	50~57세	58~61세	62~63세	64~66세	67세
	7년납	만 15~51세	52~61세	62~65세	66~69세	70세	-	-	-
7년만기	5년납	만 15~54세	55~62세	63~67세	68~70세	-	-	-	-
	3년납	만 15~58세	59~65세	66~69세	70세	-	-	-	-
	7년납	만 15~65세	66~70세	-	-	-	-	-	-
10년만기	전기납	만 15~62세	63~68세	69~70세	-	-	-	-	-
	3년납	만 15~57세	58~63세	64~67세	68~69세	70세	-	-	-
15년만기	5년납	만 15~63세	64~68세	69~70세	-	-	-	-	-
	7년납	만 15~66세	67~70세	-	-	-	-	-	-
	10년납	만 15~67세	68~70세	-	-	-	-	-	-
	전기납	만 15~67세	68~70세	-	-	-	-	-	-
20년만기	3년납	만 15~55세	56~61세	62~64세	65~67세	68~69세	70세	-	-
	5년납	만 15~61세	62~66세	67~69세	70세	-	-	-	-
	7년납	만 15~64세	65~68세	69~70세	-	-	-	-	-
	10년납	만 15~66세	67~70세	-	-	-	-	-	-

	15년 납	만 15~68 세	69~70 세	-	-	-	-	-	-
	전기납	만 15~68 세	69~70 세	-	-	-	-	-	-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보험기간-2년」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한도로 하며,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text{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 200\% \times \text{가입후 경과년수}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가능

-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의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회 10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계약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아래의 산출식에 의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 / 2$$

- (2) 내부지표 산출식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주) 1. I: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자산의 월말 잔액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3) 외부지표 산출식

$$\text{외부지표} = \frac{B_1 + B_2 + B_3}{3}$$

- 주) 1. B_1 : 국고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2. B_2 : 회사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3. B_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4. \text{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5.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6.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7.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다만,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경우 '11. 5. 2 공시 시작으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이 없어 공시 후 3개월까지는 통화안정증권 364일물과 병행 사용하여 지표금리를 산출한다.
 8. 각각의 이율은 각 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 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 평균수익률, 회사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9.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미만인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입후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2.5%
2년 미만	공시이율의 80%
3년 미만	공시이율의 90%

-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바. 공시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아.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7. 기타

가.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2)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 (3)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 한도는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액이 1구좌당 1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 (3)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하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선납보험료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24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당해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마.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0.5%를, 매월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바.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사.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본보험료×12×Min(보험료 납입기간, 10)

아. 1 구좌는 기본보험료 100 만원 이하로 한다.

자.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차.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감독규정 제 4-14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의 서 식

(별첨 제 2 호)

보 험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

(별첨 제 3 호)

보 험 계 약 부 활 (효 력 회 복) 청 약 서 의 서 식